



증여세 과세제도 해설(Ⅲ)

- 증여세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등을 중심으로 -

전 재원

국세청 납세지보호담당관실 씨기관

I. 머리말

이번호에서는 증여세 과세기 적용하는 증여세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II.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 56).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해당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

■ 증여세산출세액 = (증여세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세액

1. 세 율

증여재산에 따라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된다.

가. 기본세율

- 1)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누진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달랐으나 1997년 1월 1일 부터는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1997.1.1. ~ 1999.12.31.			2000. 1. 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5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50억원 초과	45	4억 1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2) 세율 경과조치(1999.12.28. 법 부칙 § 5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0년 1월 1일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시행 전의 증여 분을 합세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 (1) 1999년 12월 31일 시행 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산

- ① 1999.12.31. 시행 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 법 § 26에 의한 산출세액
- ② 2000.1.1. 시행 후 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1999년 12월 31일 시행 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합산

- ① 1999.12.31. 시행 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 법 § 26에 의한 산출세액



- ②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법 § 26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①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③ 1999년 12월 31일 시행 전 증여 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예 시]

- 1998. 7. 1. 부(父)로부터 40억원을 증여받고, 2007. 4. 1. 부(父)로부터 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 (4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5억원 × 50%) = 16억 9천만원
- 1998. 7. 1. 부(父)로부터 20억원을 증여받고, 2007. 4. 1. 부(父)로부터 15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 12억 9천만원
(2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 50% - 4억 6천만원) - (2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20억원 + 15억원 - 30억원) × 50%] = 12억 9천만원

나. 특례세율

1)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 30의 5) 및 가업승계 중소기업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 30의 6)을 말한다.

2) 세율 : 10%를 적용한다.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가. 할증과세의 계산방법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 부모 외 직계존속 증여재산가액 ÷ 총 증여재산가액) × 30%]- 기
할증과세된 증여세액

나. 관련 해석사례

- 1) 수증자인 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아니한다.
- 2) 모(母)가 생존한 상태에서 외조모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대상이나 수증자의 모(母)가 사망한 상태에서 외손자가 증여받으면 할증과세하지 아니한다.
- 3) 조부(祖父)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祖父)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부명의로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조부(祖父) 상속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등기접 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서면 4팀-3410, 2006.10.11).
- 4) 조부(祖父)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 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시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610, 2007. 5. 23.)

Ⅲ.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1. 납부세액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국세 핵심

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기납부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공제”로 용어변경, 2010. 1. 1.)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 해당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4호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1)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액이란 증여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며, 산출세액은 세대생략으로 인한 할증세액은 제외한다.

*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합산과세하는 경우(2006.12.31. 이전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과 과세대상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합산과세 대상기간 내에 순차로 증여받음에 따라 합산과세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기납부세액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합산과세된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 ÷ 합산과세시 증여재산가액)

2007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 7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한도액 계산

■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당해 증여재산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납부세액공제액 개정연혁】

적용시기	공제한도액 개정내용
1997.1.1. ~ 2000.12.31.	<p>■ 기납부세액공제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p> <p>①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p> <p>②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가액/합산한 증여재산가액)</p>
2001.1.1. ~ 현재	<p>■ 기납부세액공제액 : ①과 ②중 적은 금액</p> <p>①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p> <p>② 증여세 산출세액 ×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p>

다. 납부세액공제의 배제

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은 기납부세액공제로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고 부(父) 사망 후 다시 모(母)가 증여하는 경우

가) 해당 증여일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전에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모(母)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父)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母)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라. 관련 해석 사례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 과세대상을 동일인으로부터 순



국세 현실

차적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국세청 중합상담센터 서면 4탐-66, 2005.1.7.)

기납부세액공제의 한도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서 증여세 면제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중 과세분의 합계액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중 과세분에서 과세분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중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 59). 다만, 외국에서 부과된 증여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 신고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 + 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 또는 감면세액)] \times 10\%$$

나. 유의사항

- ① 산식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므로 수정신고 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 ②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비록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③ 신고한 과세표준이란 정부가 증여재산 등을 결정한 가액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만 적용하되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여러 가지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한다.

[산식] 신고세액공제

$$= [(신고한 과세표준 \times 증여세율 + 할증과세액) - 공제감면액 등] \times 10\%$$

* 신고한 과세표준(㉠ - ㉡ - ㉢)

㉠ 증여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평가오류(평가방법의 차이 포함)로 인한 과다신고금액

㉢ 채무 과소신고, 각종 공제 과소신고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조사결정시 추가로 공제한 각종 공제금액 포함)

- ④ 증여세 신고시 합산대상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였더라도 그 금액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blacksquare \text{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상속세액} = \text{증여세산출세액} \times \{[(\text{문화재자료 등} + \text{박물관 자료}) \text{의 가액}] \div [\text{증여재산(가산하는 증여재산 포함)}]\}$$

증여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징수유예의 기간 중에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증여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증여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자료 등”임)와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 등인 경우에 한함)에 전시·보존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증여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자료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를 유예한 증여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IV.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에게 2011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 133).

영농자녀가 직계비속인 손자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조세특례제한법 § 71)한다.

1. 증여자의 자경농민 요건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통작거리 20km규정은

2008.2.22. 이후 감면신청분부터 적용)

②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증자의 영농자녀 요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으로 영농·임업후계자이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구분	영농 및 임업후계자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연령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거주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가. 영농 및 임업후계자

해당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 ②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③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나. 가. 이외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②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결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③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감면대상 증여농지 등의 범위

다음 가.~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농지등"이라 함)를 말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의 인원수 제한은 없으나 농지의 면적한도는 증여자인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 감면세액 한도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한다.(국세청 종합상담센터 서면4팀-2405, 2007.8.9.).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①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②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③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별표 6의2]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관련)

-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 ② 「관광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 ③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 ④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 ⑤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 ⑥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⑦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
-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 ⑨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⑩ 「온천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 ⑪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통단지
- ⑫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
- 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 ⑭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
-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 ⑯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동법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 및 동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 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 ⑱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에 따라 화물터미널설치사업의 공사계획이 인가된 지역
- ⑲ 그 밖에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 그 밖의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4. 감면세액의 한도

2011.12.31. 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5년간 감면액은 당해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당해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5. 감면세액의 징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하여야 할 세액 × 감면받은 날부터 징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3/10,000)

다만, 5년 내 양도하거나 영농 미종사 사유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정당한 사유(5년 내 양도)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 ③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④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 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영농 미종사)

- ①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 ②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 ③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 ④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6.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7. 감면농지 등의 상속·증여세 계산 특례

가. 상속세 계산특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증여세 계산특례

본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 47(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국세 핵심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이외의 재산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8. 감면신청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②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 ③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④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 ⑤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 ⑥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⑦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①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③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